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8월 6일, 강선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7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영 의원)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적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국가공무원 의제조항이 마련되더라도 그 적용대상은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로 극히 한정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국가공무원 의제조항이 2015년도에 신설된 후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함.

- 다만,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동법을 개정하여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개별 법률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개별 법률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국방과

학연구소 임직원이 유일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다만, 이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서 일부 수정되었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